

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상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2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7.

발의의원 : 김상수, 이진환, 김영실,
박경원, 김지훈(국), 이수련,
이상기, 김지훈(민)

1. 제안이유

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수렴 근거를 마련하고,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,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수렴 규정 신설
(안 제6조제3항)
- 나. 보행환경 관련 주요계획 수립·변경 시 기본계획 반영 의무화
(안 제6조제4항)
- 다. 용어 정비를 통한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(안 제13조제2항)
- 라. 보행환경개선사업 범위 확대(안 제13조제2항제6호~제8호까지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6. 관련 법령 : 덧붙임

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.

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 중 “설치,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”를 “설치, 차도와 보도의 턱 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인도”를 “보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차도·인도”를 “차도·보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시인성 강화
7. 보행자 사고가 다발하는 구역의 도로구조 개선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본계획 수립) ①·②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13조(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, 신호주기 개선, 음향 신호기 <u>설치</u>, 차도와 인도의 <u>턱 등을 정비</u></p> <p>2. <u>인도</u>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</p>	<p>제6조(기본계획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.</u></p> <p>④ <u>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3조(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</u>, 차도와 보도의 <u>턱 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</u></p> <p>2. <u>보도</u> -----</p>

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,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, 주차금지 등에 관한 사항

3.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·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

4. ~ 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3. -----

----- 차도·보도 -----

4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시인성 강화

7. 보행자 사고가 다발하는 구역의 도로구조 개선
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

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·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
- 개정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수렴 규정 신설, 관련계획의 수립·변경 시 기본계획 반영 의무화 및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으로, 비용추계는 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 가능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

4. 작성자

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 상 열

□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
제7조의2(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1.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
 2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
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·보행 관련 계획
-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
2.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
3.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·보수 및 성능 개선
4.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
5. 보행자길 신설,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
6.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
7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
 - 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
 - 나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
8.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0조(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)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행자길 신설,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
2.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
3. 차도와 보도의 분리, 고원식(高原式) 횡단보도(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)의 설치,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,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·보수 및 성능 개선
4.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
5. 노인·임산부·어린이·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
6.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